

## 한국체육대학교 경기력 우수자 격려금 지급 규정

제정 2005. 8. 10(규칙 제457호)

제1차 변경 2006. 5. 23(규칙 제474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경기에 출전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수립한 재학생과 지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회) 격려금의 지급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올림픽
2. 세계선수권대회
3. 아시아경기대회
4. 유니버시아드대회
5.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, 국제마라톤대회(전년도말 세계랭킹 40위 이내의 선수가 2명 이상 참가한 대회)
6. 아시아선수권대회
7.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
8. 동아시아대회

제3조(지급기준) ①대회출전선수 및 입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을 초과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출전학생에 대한 격려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1. 제2조 제1호 대회참가자 : 500,000원
2.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회참가자 : 300,000원
3. 제2조 제5호 내지 제8호의 대회참가자 : 100,000원
4. 대표선발전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경우 출전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,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1. 제2조 제1호 대회의 입상자 :  
1위 5,000,000원, 2위 3,000,000원, 3위 2,000,000원
2.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대회의 입상자 : 1위 2,000,000원, 2위 1,000,000원, 3위 500,000원. 다만, 매년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는 지급 기준액의 50%를 지급한다.
3. 제2조 제5호 대회의 입상자 : 1위 500,000원, 2위 300,000원, 3위 200,000원
4. 한국신기록 수립자 : 500,000원
5. 제2조 제6호 내지 제8호 대회 입상자에게는 입상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6.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1호 내지 제4호 지급 기준액의 75% 범위내에서 육성종목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..

7. 동일 대회에서 2개 이상의 1위 입상자(단체전 제외)에게는 기준 지급액의 150% 이내를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시기) 대회참가자 격려금은 대회참가 전, 입상자의 포상금은 대회종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급대상자 확인방법) 대회 참가자 격려금은 당해 종목의 가맹 경기단체의 확인에 의하며, 대회입상자 격려금은 대회출전 결과보고서에 의한다.

#### 부 칙(2005. . . 제 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기력우수자격려금지급규정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 한국체육대학교 경기력우수자격려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.

#### 부 칙(2006. . . 제 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